

사 업 연 도	. . . ~	가 산 세 액 계 산 서	법 인 명	
			사 업 자 등 록 번 호	

1. 가산세액의 계산

① 구 분		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				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			
		② 계산기준	③ 기준금액	④ 가산세율	⑤ 코드	⑥ 가산세액	② 계산기준	③ 기준금액	④ 가산세율	⑤ 코드	⑥ 가산세액
무기장		산출세액		20/100	27						
		수입금액		7/10,000	28						
무신고	일반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29	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42	
		수입금액		7(3.5)/10,000	30		수입금액		7(3.5)/10,000	43	
	부정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31	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44	
		수입금액		60(30)/100	80	' 15.1.1.개시	수입금액		14(7)/10,000	45	
과소 신고	일반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3	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46	
	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22	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47	
	부정	과소신고납부세액		60/100	81	' 15.1.1.개시	과소신고 수입금액		14/10,000	48	
		과소신고 수입금액		14/10,000	23		공제 감면세액		40/100	72	
납부지연		(일수) 미납세액	()	2.2/10,000	4		(일수) 미납세액	()	2.2/10,000	51	
지출증명서류		미(하위)수취금액		2/100	8		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	()		65	
		합 계					합 계			53	
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										
① 구분		② 계산기준	③ 기준금액	④ 가산세율	⑤ 코드	⑥ 가산세액					
무신고	일반	무신고납부세액		20(10)/100	83						
		수입금액		7(3.5)/10,000	84						
	부정	무신고납부세액		40(20)/100	85						
		수입금액		14(7)/10,000	86						
과소 신고	일반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87						
	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88						
	부정	과소신고납부세액		14/10,000	89						
		과소신고 수입금액		14/10,000	89						
납부지연		(일수) 미납세액	()	2.2/10,000	90						
합 계						91					
법정납부기한 (. .)											
납부일 (. .)											

2.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

⑦ 구분	⑧ 과소신고 납부세액	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				과소신고 납부세액			
		⑨ 계	⑩ 일반	⑪ 부정	⑫ 부정 (국제거래)	⑬ 계	⑭ 일반 [⑧×(⑩/⑨)]	⑮ 부정 [⑧×(⑪/⑨)]	⑯ 부정 (국제거래) [⑧×(⑫/⑨)]
각 사업연도 소득	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								
토지 등 양도소득	과소신고								

작성 방법

- 무기장가산세
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)에 적습니다.
- 무신고가산세
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)에 적습니다. 다만,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·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%,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- 과소신고가산세
가.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(⑩), 부정과소(⑪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⑫)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(⑭), 부정과소(⑮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⑯)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나. ⑭, ⑮,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다.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)에 적습니다.
라.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(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)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「기납부세액 과다 등」의 칸에 적습니다.
마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%(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%,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%,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%,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- 납부지연가산세
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을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을 적용한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.
- 지출증명서류 미수취·허위수취 가산세
미수취·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.
-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
가. 미제출금액 등에 1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나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/1,000의 가산세율을,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/10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다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3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,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/10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라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3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,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/10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. 다만,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
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(출자지분)의 액면금액(출자가액)에 1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
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, 누락제출,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(출자지분)의 액면금액(출자가액)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* 2012.1.1.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, 2013.1.1.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
- 계산서 및 (세금)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
미발급 또는 가공(위장)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/100의 가산세율을,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/100의 가산세율을, 계산서·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,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서의 공급가액에 5(3)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,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. 다만, 계산서·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* 2012.1.1.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(위장)수수분부터 2/100의 가산세를 적용, 종전의 경우 1/100의 가산세를 적용
** 2016.12.31.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서의 경우 3(1)/1,000의 가산세를 적용
-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
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(2020.1.1.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)에 5/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/1,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
가.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/100의 가산세율(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)을 적용하고,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/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(미가맹기간/해당 사업연도의 일수)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*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.
나.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'19.1.1.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(10)%를 적용
-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
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/1,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다만,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/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.
* 2014.1.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- 중간에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: 중간에납부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.
-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: 배분할 금액(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)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.
-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
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, 작은 금액은 ()에 적습니다.
-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
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/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/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-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서식의 ⑭란, ⑮란 및 ⑯란에 각각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